

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(일반법인용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납세자	①법인명	②법인등록번호
	③전화번호	④전자우편주소
	⑤주소	

안부내역

[illegible]

※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·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·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각 시·군·구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.

작성방법

□ 납세자란

- ①법인명: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 ②법인등록번호: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 ③전화번호: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(휴대전화)번호를 적습니다.
 ④전자우편주소: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.
 ⑤주소: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.

□ 안분내역란

- ⑥자치단체 : 해당 지방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.
 ⑦사업장 구분: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.

본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본점	지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지점	연결자법인의 본점	연결자법인의 지점	특별시·광역시 내 주된 사업장
01	02	03	04	05

- ⑧사업자등록번호: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 ⑨사업장명: 해당 법인의 사업장명을 사업장별로 적습니다.
 ⑩사업장소재지: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.
 ⑪종업원 수: 「지방세법」 제74조제8호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.
 ⑫건축물 연면적: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(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)의 연면적을 적습니다. 다만,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(수조·저유조·저장창고·저장조·송유관·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)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.
 ⑬안분율: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 비율을 소수점 6자리까지 기재(7번째 자리 절사)하고, 남은 비율은 본점에 가산하여 기재합니다.

$$\text{안분율} = \left(\frac{\text{관할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}}{\text{법인의 총 종업원 수}} + \frac{\text{관할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연면적}}{\text{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}} \right) \div 2$$

- ⑭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 :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(별지 제43호서식)의 ④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.

단,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·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·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기재하고, 종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은 비워둡니다.

※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(군·구) 과(☎ -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(연결집단용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연결모법인	①법인명	②법인등록번호
	③전화번호	④전자우편주소
	⑤주소	
연결자법인	⑰법인명	⑱법인등록번호
	⑲주소	

안분내역

[illegible]

※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·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·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각 시·군·구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.

작성방법

□ 연결모법인란 및 연결자법인란

- ①, ⑪법인명: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 ②, ⑫법인등록번호: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 ③전화번호: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(휴대전화)번호를 적습니다.
 ④전자우편주소: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.
 ⑤, ⑬주소: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.

□ 안분내역란

- ⑥자치단체: 해당 지방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.
 ⑦사업장 구분: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.

본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본점	지점 또는 연결모법인의 지점	연결자법인의 본점	연결자법인의 지점	특별시·광역시 내 주된 사업장
01	02	03	04	05

- ⑧사업자등록번호: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 ⑨사업장명: 해당 법인의 사업장명을 사업장별로 적습니다.
 ⑩사업장소재지: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.
 ⑪종업원 수: 「지방세법」 제74조제8호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.
 ⑫ 건축물 연면적: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(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)의 연면적을 적습니다. 다만,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(수조·저유조·저장창고·저장조·송유관·송수관 및 송전철탐만 해당)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.
 ⑬ 안분율: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 비율을 소수점 6자리까지 기재(7번째 자리 절사)하고, 남은 비율은 본점에 가산하여 기재합니다.

$$\text{안분율} = \left(\frac{\text{관할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}}{\text{법인의 총 종업원 수}} + \frac{\text{관할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연면적}}{\text{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}} \right) \div 2$$

- ⑭ 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액 :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(별지 제44호서식)에서 '㉔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' 항목의 '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'에 기재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 단,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·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·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에 기재하고, 종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은 비워둡니다.

※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(군·구) 과(☎ -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